

의안번호	제 74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·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
-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 피보험자가 됨
- 보조금의 지원 등 (안 제4조)
 -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보조
- 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 (안 제5조)
 - 시장·군수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,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결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청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도민안전보험”이란 충청북도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도내 시·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2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, 사회재난을 말한다.

제3조(가입대상) ① 충청북도에 「주민등록법」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(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)을 피보험자로 한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시장·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검토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)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장·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는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6조(자료 요청)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,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

2. ~ 11. (생략)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·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보험료 가입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보조금의 지원 등)
 - 충청북도지사는 시장·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추진에 필요한 보험료를 추계하였음

나. 추 계 결 과 : '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,194,560천원(도비 1,111,980, 시군비 2,082,580)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- 도 비 : 1,111,980천원(35%), 시군비 : 2,082,580천원(65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최성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도민안전보험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	지방세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416,516	416,516	416,516	416,516	416,516	2,082,58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